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60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이용우 · 임미애 · 김남근
박민규 · 손명수 · 신장식
민병덕 · 박 정 · 서영석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 · 송전사업 · 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판매사업”을 “전기판매사업·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계·시공·준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배전사업자”를 “배전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경우 유지·관리 책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준공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의 운영권 및 관리권을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전하여야 하며, 운영권 및 관리권의 이전 절차·대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 송전사업 · 배전사업 · <u>전기판매사업</u>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 ----- ----- <u>전기판매사업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u> ----- -----.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 · 송전사업자 · 배전사업자 · <u>전기판매사업자</u>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2. ----- ----- <u>전기판매사업자 ·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u> --- -----.
3. ~ 10. (생략) <u><신설></u>	3.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계 · 시공 · 준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u>

<신 설>

11. ~ 21. (생 략)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10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 21. (현행과 같음)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①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 유지·관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경우 유지·관리 책무는 제외한다)-----.

②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는 준공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의 운영권 및 관리권을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전하여야 하며, 운영권 및 관리권의 이전 절차·대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